

정책연구자료 97-03, 1,000부, 79쪽

家庭儀禮의 經濟的 費用分析

李 必 道

李 顯 松

裴 花 玉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개방화의 영향으로 소비수준이 매우 높아져 過消費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家庭儀禮에 있어서 과소비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家庭儀禮慣行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 행해지고 있는 誇示的 行態의 가정의례가 점차 확산되어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의 제정 목적은 虛禮虛飾을 一掃하고 가정의례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社會氣風을 振作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 관행에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家庭儀禮의 費用의 증가와 과도한 慶弔事金의 지출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정의례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례비용을 억제하고 가정의례 의식의 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 方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婚禮, 葬禮 등의 가정의례 행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실태를 살펴보고, 가정의례 비용이 가계경제에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報告書가 건전한 가정의례관행의 실천 및 확산을 위한 政策豎立

에 一助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담당관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본 報告書의 집필은 본원의 李必道 責任研究員, 李顯松 副研究委員, 裒花玉 主任研究員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 研究陣의 구체적인 담당영역은 다음과 같다.

家庭儀禮 慣行의 變化와 問題點 (李必道·李顯松)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李顯松)

葬墓關聯 費用規模 推定 (李必道)

慶弔費 支出 分析 (李顯松·裒花玉)

家庭儀禮의 高費用構造 改善方案 (李必道·李顯松)

研究陣은 작성된 本 報告書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본원의 魯仁喆 先任研究委員과 金勝權 責任研究員에게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河清

目次

要約	9
I. 序論	15
1. 研究의 背景	15
2.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16
II. 家庭儀禮 慣行의 變化와 問題點	18
1. 婚禮慣行의 變化	18
2. 葬墓慣行의 變化	21
3. 其他 家庭儀禮慣行의 變化	25
4. 家庭儀禮慣行의 問題點	26
III.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30
1. 婚禮件數의 推定	31
2.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33
IV. 葬墓關聯 費用規模 推定	37
1. 葬儀需要의 推定	38
2. 葬墓關聯 直接費用 推定	39
V. 慶弔費 支出 分析	52
1. 慶弔費의 形態	52
2. 慶弔費의 支出規模와 特性	54

VI. 結論	66
1. 家庭儀禮費用的 問題點	66
2. 家庭儀禮의 高費用構造 改善方案	69
參考文獻	78

表 目 次

〈表 1〉 葬禮場所의 類型別 分類	23
〈表 2〉 婚禮費用的 增加推移	33
〈表 3〉 死亡者 規模 및 粗死亡率의 推移	38
〈表 4〉 葬禮場所와 葬禮方法別 葬禮件數(1996年)	39
〈表 5〉 代表的인 葬儀費用 構成(1996年)	41
〈表 6〉 墓地類型의 分類	46
〈表 7〉 代表的인 墓地費用 構成(1996年)	48
〈表 8〉 葬禮 構成要素別 葬禮費用	51
〈表 9〉 月平均 慶弔費 支出分布	55
〈表 10〉 分期別 平均 慶弔費 支出分布	57
〈表 11〉 年度別 月平均 慶弔費 推移	59
〈表 12〉 慶弔費 支出分布	61
〈表 13〉 家口主의 社會經濟的 特性別 慶弔費 支出分布	63
〈表 14〉 家口主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慶弔費 分布	64

圖目次

[圖 1] 葬墓關聯 總費用 構成	41
-------------------------	----

要約

1. 研究의 背景

- 1960년대 이후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가정의례관행도 많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시적 행태의 가정의례가 점차 확산되어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를 일소하기 위하여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의 관행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
- 家庭儀禮의 費用의 증가와 과도한 慶弔事金의 지출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家庭儀禮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家庭儀禮費用을 억제하고 가정의례 儀式의 簡素化를 추진할 수 있는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 方案이 절실히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혼례, 장례 등의 가정의례 행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실태를 살펴보고, 가정의례 비용이 가정경제에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즉 誇示的 行態의 가정의례 관련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가정의례 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家庭儀禮 慣行의 變化와 問題點

가. 婚禮慣行의 變化

- 혼례관행의 변화는 婚姻儀禮 節次와 經濟費用 問題로 대별하여 살펴봄.
- 혼인절차에 있어서 과거 혼수와 예단은 순수한 예물교환의 성격을 띠었음. 그러나 현재는 외형상으로 전통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서 가짓수가 늘어나고 내용이 비대해졌음.
- 또한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경에 대해 신부측이 혼수, 예물, 예단의 형태로 '신랑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 특히 급속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부 부유층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과시욕으로 인한 豪華婚需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음.

나. 葬禮 및 墓地慣行의 變化

- 장례절차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생활조건이 변화하면서 외향적으로 볼 때 합리화 및 간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직업적인 葬儀社 출현, 殮襲과정과 成服祭의 간소화, 火葬 및 納骨制의 등장 등 전통적인 장례형식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었고 병원사망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장례장소도 자택보다 病院靈安室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묘지관행의 경우, 화장과 납골당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장과 개인묘지 위주의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다. 家庭儀禮慣行의 問題點

-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 관행의 배경에는 體面文化의 전반적 확산, 가정의례에 관한 건전 가치관의 부재, 가정의례의 물질적 상품화를 들 수 있음.
- 가정의례 관행과 관련하여 호화결혼식, 과도한 혼수와 예단문제, 장의사와 병원영안실 문제, 호화분묘, 불법 및 무연고분묘 문제 등 여러 가지 社會的 弊害가 발생하고 있음.

3.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 현행 혼례관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婚禮 費用 支出慣行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 혼례비용의 규모를 밝히는데 분석을 집중하고자 함.
- 혼례비용의 구성내역은 예단, 예물, 신혼살림 마련에 드는 혼수비용, 약혼식, 함값,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폐백 등에 드는 혼인 절차 비용으로 구분됨. 그러나 혼례 구성요소별 비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혼례비용 조사에서 소득수준 대비 가장 적은 혼례비용 비율인 소득의 1.71배를 혼례 총비용 추정근거로 이용하였음.
- 이결과 199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소득 215만원을 기초로 전국 연간 혼례비용을 산정하면 12조 2천억원을 넘고 있음.

〈表 1〉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건당 비용(만원)	총비용(억원)
연간 혼례관련 총비용	3,680	122,173

4. 葬墓關聯 費用規模 推定

가. 葬墓關聯 直接費用 推定

- 장묘관련 총비용의 구성내역은 장례관련 비용, 묘지관련 비용, 그리고 화장관련 비용으로 대별됨.
- 전체 사망자 규모를 통하여 장의수요를 파악하고 장의절차에 따른 서비스 및 물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장묘와 관련된 직접비용의 총규모를 추정하였음.
- 건당 장례비용은 610만원 정도이며, 연간 장묘비용의 총규모는 약 1조 519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表 2〉 葬禮 構成要素別 葬禮費用

	건당 비용(만원)	총비용(억원)	구성비(%)
총계	610	15,199	100.0
- 장례관련 비용	370	9,213	60.6
· 장의용품비	174	4,326	28.4
· 조문객접대비	136	3,383	22.3
· 장의자동차비	40	996	6.6
· 장례식장비	60	508	3.3
- 묘지관련 비용	304	5,675	37.4
· 공설공원묘지	160	227	1.5
· 사설공원묘지	450	1,972	13.0
· 개인묘지	270	3,476	22.9
- 화장관련 비용	50	311	2.0

5. 慶弔費 支出 分析

- 관혼상제비에 비해 경조비는 한번에 드는 금액은 적으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형편임. 최근에는 경조비의 성

격이 왜곡되어 가계에 부담을 크게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조비 분석에 초점을 두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1996년 도시근로자가구는 매월 평균 약 39,300원, 연간 472,000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고 있음.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83%에 해당됨.
- 이를 근거로 하여 1996년의 慶弔費 總支出規模를 추정해 보면 도시지역은 약 4조 2천억원이며 농촌지역은 1조원으로 합계 약 5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6. 家庭儀禮의 高費用構造 改善方案

가. 健全 婚禮모델의 實踐方案

- 과도한 혼례비용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신랑측과 신부측간의 費用分擔構造를 개선해야 할 것임. 신랑측에서 주택마련비용을 부담하고 신부측에서 주택비용을 제외한 기타 혼례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부측에서도 주택마련 비용에 일조하고 기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건전한 혼례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이 집단층의 건전 혼례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임.

나. 健全한 喪葬禮의 規範 設定

- 喪葬禮의 경우에도 體面文化와 사회경제적 勢力誇示가 확산되어 있으며 특히 허례허식적인 상장례 관행은 중·상류층 이상의 계층에게서 발견되고 있음. 가장 유효한 방안은 社會指導層 및 公職者

를 대상으로 외적 판별 가능한 영역에 대한 健全 喪葬禮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規範化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 잠식이 심각함. 국토의 이용효율 측면에서나 장묘문화의 비용 간소화의 측면에서 火葬慣行이 擴散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화장장을 公園化 시키는 등 화장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投資 및 對國民 弘報가 필요함.

다. 慶弔金 授受慣行의 改善

- 사회적 영향을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하객 초청 행위와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訃告 行爲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우체국의 慶弔事 카드보내기 운동이나 경조금 받지 않기 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경조금 문화의 폐해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공무원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公務員을 포함한 公共機關 종사자에서부터 경조비 과다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라. 家庭儀禮關聯 서비스의 營業制度 改善

- 혼례관련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서비스 시설 및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혼례와 관련한 전근대적인 영업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장묘관련 서비스업의 공급자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쇄적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임.

I. 序論

1. 研究의 背景

예로부터 家庭儀禮는 전통적인 관습 및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전통사회의 가정의례는 가부장제적이고 가족공동체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근년에 와서는 자본주의적 사회분위기에 의해 관습, 도덕과 같은 윤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사회전반적 구조적 변화는 가정의례관행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시적 행태의 가정의례가 점차 확산되어 국민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

법률상 家庭儀禮라 함은 婚禮, 常禮, 祭禮, 回甲宴 등을 말하며, 이러한 가정의례에 있어서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 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의 관행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혼례의 경우는 소비의 고급화·대형화 경향으로 혼수, 예단, 신혼여행, 신혼살림비용 등 호화사치 혼례 행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喪禮의 경우 장례용품, 장의서비스 및 관련

1) 소비자보호원은 조사를 통해 최근들어 가정의례와 관련하여 과시적, 허례허식적 행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바 있다(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서비스와 묘지구입 등 장례관련업소들의 폐해 등 葬墓慣行의 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혼례, 상장례, 수연례 등 家庭儀禮의 費用의 증가와 상호부조 형태인 慶弔事金의 과도한 지출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家庭儀禮慣行에 대한 改善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소비지출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건과 환경들에 의해 가정의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허례허식적인 家庭儀禮費用을 억제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건성이 유지된 가정의례 儀式의 簡素化를 추진하는 등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 方案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례, 장례 등의 가정의례 행사에 있어서 지출수준과 직접 비용을 살펴보고, 가정의례 비용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家庭儀禮 文化定着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즉 誇示的 行態의 가정의례 관련비용을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가정의례 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현행 가족을 중심으로 치루어지고 있는 家庭儀禮에 있어서 과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인 또는 가족의 국한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사회문제의 접근은 이론적인 면에서 虛禮虛飾的인 家庭儀禮問題를 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의례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의 이론적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문제의 현황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례와 관련된 規範과 慣行의 變化를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둘째, 각종 가정의례 관련 기존 조사자료와 관련 서비스업체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家庭儀禮 서비스의 形態와 結婚 및 葬禮費用의 支出實態를 파악한다. 셋째,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례 비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慶弔費 支出實態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제한된 자료이나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례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 이러한 비용 지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

冠婚喪祭의 직접비용과 관련하여서는 婚禮와 喪禮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제사, 회갑, 돌 등의 가정의례가 덜 중요하여서가 아니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혼례 및 상례와 관련한 과소비 문제가 다른 어떤 가정의례의 경우보다도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조비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정의례 전반에 걸친 慶弔費 支出 慣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또한 자료의 성격상 가정의례의 유형에 따른 경조비 지출 자료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혼례와 상례가 가정의례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의 제약은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I. 家庭儀禮 慣行의 變化와 問題點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든, 가족집단으로 경험하게 되든, 가족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주기적인 통과의례는 크게 分離(seperation), 轉移(transition), 統合(incorporation)의 세가지 국면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반 개념, 1992). 가정의례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통과의례로써 혼례는 통합의례로, 장례는 분리의례로, 회갑연 등은 전이의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드리는 제례의 경우는 가족주기적 단계의 통과의례이기보다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리는 강화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가정의례는 1960년대 이후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과정속에서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아 가정의례 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삶의 원리를 공식화하는 과정인 가정의례는 사회변화의 전체적 맥락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상징행위라는 점에서 다양한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제사회의 변화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정의례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의 표출보다는 절차와 형식만을 갖춘 채 誇示的 行態로 흘러 社會的 違和感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76~81). 여기서는 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현행 가정의례 관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婚禮慣行의 變化

가족주기의 출발인 혼인은 일생의 대사로서 혼인을 잘하느냐 못하

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아가느냐가 좌우되며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양가의 인척관계 또한 중요하다. 혼인식은 가족주기단계에서 통합기능의 의례이며, 새롭게 부부로서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형식과 절차를 밟는다. 예컨대 택일하는 과정에서 生起福德의 길일을 택한다거나, 涓吉과 許婚書를 복 많은 친척어른을 통해 전달한다거나 신부집에서 함을 받을 경우 다복한 여자가 받으며, 幣帛시 시부모가 대추를 신부 치마폭에 던지며 하는 德談 등이 그것이다. 혼인이라는 가정의례의 참여범위는 친인척과 마을 공동체를 포함하며, 새로이 형성되는 가정은 하객들의 축복속에서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형태를 띤다.

혼례의 관행의 변화는 婚姻儀禮 節次와 이에 따른 經濟費用 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혼수, 예단, 예물과 관련된 행태’ 및 포괄적 의미에서 ‘혼인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물질적 재화의 이동’(김모란, 1994)인 婚姻去來慣行²⁾의 변화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혼례관행의 변화를 보면 과거의 婚需와 禮緞 마련은 혼인성립의 상징으로서 순수한 예물교환의 성격을 띠었다. 한국의 혼례에서 예물보내기는 주로 신랑집이 주체가 되어 신부집에 행하는 준비의례의 하나로서 중국의 혼인예법서가 제시하는 六禮 혹은 四禮의 절차 중 納徵禮의 혼인성립을 위한 상징적 예물의 성격을 띠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중국의 예를 모범으로 삼았던 만큼 납징례의 이러한 의미가 수용되었던 것으로서, 양가의 납징례에서는 예물의 물량이 많고 적음보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2) 혼인거래관행에서 ‘거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동류혼을 유발시키는 메카니즘 가운데 계산과 연관시키는 개념으로 혼인시 물질적 이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타산적 교환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게 주고 받느냐라고 하는 예의 형식이 문제시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이후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婚需와 禮物 마련의 절차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전통적 절차를 따라가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부부중심의 핵가족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혼가구의 주택마련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신랑측이 주택을 마련하고 살림살이 장만은 신부측이 부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마련은 주택 및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가족관계의 역학상 신랑측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당사자의 재산이 되는 반면, 신부측의 신혼살림장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신부가족의 경우 신혼살림 장만과 혼수가 혼인을 위한 반강제적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지위나 조건 또는 노골적인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 와서는 신부측이 주택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향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3; 소비자보호원, 1997).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식적 요구 또는 의식적 요구가 없더라도 상대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변질된 의미의 禮物交換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신랑과 그 가족에 대한 禮物의 肥大化이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신부측의 시댁측에 대한 예물과 예단 마련이 혼인의 핵심적 절차로 부각되고,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경에 대해 신부측이 婚需, 禮物, 禮緞의 형태로 ‘신랑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부 부유층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과시욕으로 인한 豪華婚需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에 있어서 반드시 신랑측의 의식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신랑의 지위에 대해 신부측이 물질적 지불을 하는 교환의 원리가 일

부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社會原理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모란, 1994).

2. 葬墓慣行의 變化

喪葬禮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경험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데 이에 따른 通過儀禮인 것이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하나가 현실 세계를 떠나는 단계로 분리의례의 기능을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간을 지키는 상례의 복잡하고 긴 절차는 그만큼 부모님과의 분리를 애석해 하고 슬퍼하는 효의 실천적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장례가 행해지는 동안 집안에는 喪廳을 차려놓아 신성한 영역임을 지켰고, 屍身을 모신 墓域에도 신성함을 유지하고자 하여, 효의 실천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례였다. 喪葬禮의 주체적 참여범위나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볼 때 다른 어떤 가정의례보다도 의미가 깊을 뿐만 아니라 문상객의 범위나 마을의 상여꾼과 묘역 일을 품앗이하는 등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례의 협조적인 범위도 넓게 확대되어 있다.

가. 葬儀慣行

장의관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적인 葬儀社 출현, 殮襲과정과 成服祭의 간소화, 三虞祭, 卒哭祭, 小喪 및 大喪의 소멸, 火葬 및 納骨制의 등장 등 전통적인 장례형식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해방이후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장례는 현세의 삶을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는 世俗化(secularization)의 길을 밟으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장례절차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생활조

건이 변화하면서 외향적으로 합리화 및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장철수, 1995).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례장소는 자택에서 장례를 지내는 사례가 1985년 75.3%에서 1995년 37.5%로 감소한 반면 병원에서 장례를 치내는 비율은 19.6%에서 60.6%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대도시 中·上流層을 중심으로 병원영안실 이용이 확산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 급속히 증가했음을 읽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자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葬禮場所에 있어서는 병원사망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자택으로 퇴원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점차 퇴조하는 반면, 事故死의 증가와 임종시에 병원으로 입원하는 현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고사는 客死로 인식되어 정상적인 장례의 절차를 밟도록 기대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장례장소가 집밖의 장소, 보다 구체적으로는 病院靈安室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하겠다.

장례장소에 있어서 病院靈安室 이용이 급속히 확대된 원인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居住空間의 狹小化, 즉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확산으로 집밖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核家族 理念의 확산으로 생활영역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례는 가족의 영역 밖에서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便宜主義의 확산은 장례에 있어서도 죽음을

3) 1985년에서 1995년에 걸친 10년 동안 일간신문의 訃告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애도하고, 슬픔을 위무하는 장례의 본래의 의미는 희박해지고 일단 치루어 내어야 하는 절차로 변질되게 되었다(이현송·이필도, 1995).

〈表 1〉 葬禮場所의 類型別 分類

(단위: 건수, %)

장례장소	1985	1989	1992	1995
자택	235(75.3)	294(60.4)	416(50.0)	297(37.5)
병원	61(19.6)	172(35.3)	379(45.6)	480(60.6)
기타	16(5.1)	21(4.3)	37(4.4)	15(1.9)
총계	312(100.0)	487(100.0)	832(100.0)	792(100.0)

資料: 이현송·이필도, 『장의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33.

葬儀慣行은 전국 각지의 風習과 慣習, 그리고 宗教에 따라 통일된 양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장의용품을 비롯한 장의관련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됨에 품질, 가격 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크다. 장의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데 특히 형식적인 弔文으로 인한 경건한 장례가 되지 못하는 점과, 음식 대접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위생상의 문제, 유족 및 조문객들이 활용할 공간 부족, 자신들의 勢誇示와 낭비적인 요소로 인한 違和感 조성 등은 장의관행에서 시급히 탈피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問喪을 가서 밤샘을 해주는 풍습은 슬픔을 당한 상가에는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문상으로 밤샘을 해야한다는 것은 문상객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상가측에서도 술과 음식을 접대해야 하는 일손과 그에 따른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요구로 인하여 밤샘을 하는 문상관행은 조만간 사라져 갈 것으로 예측되며, 1990년대에 들

어와 그러한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나. 墓地慣行의 變化

한국토지행정학회(1996)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선택할 장례방법으로 埋葬 43%, 화장후 納骨堂 안치 38%, 일정기간 매장후 납골당 안치는 19%로 화장과 납골당 선호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火葬率은 1970년 13.9% 이후 조금씩 증가되어 1992년 18.4%, 1996년에는 23.5%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이는 본인이 화장을 원하더라도 실제 장례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고 전통적인 관습과 풍수사상, 종교성 등에 영향을 받아 埋葬選好 意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장위주의 묘지선호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1995년말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982km²(전 국토의 1%)로 매년 약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매장은 집단묘지보다는 개인묘지를 선호하고 있다⁵⁾. 이는 조상묘지에 대한 인식이 風水地理 思想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식된 도리로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온 가족이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묘지설치 지역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堂을 찾아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관행은 경지화가 가능한 국토를 묘지에 의해 잠식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 당시에는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 놓고, 그 이후는 묘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無緣故 묘지로 남게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향후 묘지수요의 누적과 개인묘지의 난립은 묘지마련의

4)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 화장률은 일본이 97%, 태국 90%, 영국 6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홍철, 『화장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장묘문화 발전방안 공청회』, 1992).

5) 개인묘지의 선호의식은 개인묘지 점유율이 70%를 넘고,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이 15평이 넘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오홍철, 1992).

어려움과 자연환경의 훼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葬墓에 드는 費用은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데, 이는 상장례에서 부담스러운 관행을 고쳐 나가기 보다 전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례의 본질적인 면은 소멸된 채 형식을 지키려는 생각과 함께 장묘관련 서비스업소들의 商魂까지 겹쳐 상주는 물론 문상객에게도 심적, 물적부담을 주고 있다. 相扶相助의 의미로 주고 받던 부조금 및 하객초청이 일부 계층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 및 금전 교환관행으로 변질되어 상장례가 형식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묘관행은 상류층에서 자신의 지위 확인 및 타집단에 대한 과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다른 계층에까지 확산을 가져와 葬墓慣行이 점차 高費用構造로 변화하도록 하고 있다.

3. 其他 家庭儀禮慣行의 變化

혼례와 상례이외의 중요한 통과의례로 壽宴禮를 들 수 있다. 환갑 잔치는 태어난 해의 간지가 한바퀴 순회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전이의례의 기능을 한다. 환갑을 맞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부모의 長壽를 기념하며, 자손이 번창하고 가족의 우애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강화의례의 기능도 크다. 환갑을 맞이하는 1년 동안은 가족의 전이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가정의례와 겹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의례의 참여범위는 가족중심적이며, 친인척과 이웃으로 확대되는 축제적 성격을 지닌다.

근래에는 전통적인 환갑잔치보다는 형식은 갖추되 略式으로 의례를 행하면서, 일가 친척과 사회적 연결망의 축하객을 초청하여 대형 음

식점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와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長壽를 축하하는 의미로는 칠순잔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효도관광의 형식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환갑잔치에 드는 비용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부유층의 경우는 비용측면에서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소득계층의 경우는 형편이 어려워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불효라는 중압감으로 무리하여 잔치를 치루고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 중상류계층은 잔치 또는 해외여행 경비를 위해 형제 및 자매들이 계를 통해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조상에게 드리는 제례는 茶禮, 忌祭, 時祭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제례는 개개인의 가족주기적 단계의 통과의례이기보다는 歲時風俗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드리는 강화의례의 성격이 강하다. 제례는 각 문중의 집단적 共同體 意識이 뚜렷하고 단합의 기능도 크기 때문에 제례를 함께 공유하는 집단에의 자기정체성이 매우 높다(장철수, 1995). 제례는 도시 중심적 생활양식과 사회환경, 그리고 서구적인 직업관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격이 혈연이라는 제한성을 유지하면서 배타적 형식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家庭儀禮慣行의 問題點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의 제정 목적은 虛禮虛飾을 일소하고 가정의례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社會氣風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가정의례는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의례 관행과 관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기본질서를 인위적·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례는 인습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그 실행이 전제되는 새로운 차원의 場, 즉 가정의례의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과 전통과의 유대속에서 기본원리를 제시하지 못하여 건전한 家庭儀禮文化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體面 및 誇示文化의 擴散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 관행의 배경에는 體面文化의 전반적 확산이 작용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1997). 가정의례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세력과 시 및 체면유지, 남의 이목을 의식한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게 된다. 체면 및 과시문화의 확산은 誇示消費⁶⁾를 가져오며 가정의례 행사를 낭비성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誇示消費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體面維持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시소비와 사회전반적인 과소비 분위기의 영향은 예단, 신혼여행, 신혼살림비용과 장의용품 및 묘지관련 비용 등 消費의 高級化, 大型化로 가정의례의 고비용구조를 유도하게 된다⁷⁾.

-
- 6) 일반적으로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과시소비는 과소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7) 혼례문화와 관련된 소비의 고급화 및 대형화는 90년대에 들어 뚜렷이 드러난다. 예단 및 예물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가짓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혼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결혼 예식의 대형화 추세, 신혼여행지의 고급화 및 국제화에 대한 최근의 조사도 있다(이현송·배화옥,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996, pp.10~14; 소비자보호원, 『혼례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pp.25~75).

나. 家庭儀禮에 관한 價値觀의 不在

가정의례란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통과례로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도시화·산업화되면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부여했던 가정의례에 대한 의미는 상실되어가고 형식만이 잔존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즉 가정의례가 우리의 현재의 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信念體系가 없는 상태이다. 가정의례의 현대적인 의미를 새로이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전통과의 유대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정의례에 대한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이 단순히 ‘해치워 버려야 할’ 번거로운 행사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 家庭儀禮의 商品化

가정의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일생의 단 한 번이라는 이유로 또는 자식 또는 부모된 도리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정의례 관련 서비스업체들의 무분별한 商業主義的 競爭 심화로 가정의례 행사의 각종 의식과 절차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는 반면 물질적 이익과 비용적인 요소로서만 부각되고 있다. 현재 가정의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상업주의적 形式主義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정의례업체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혼인 및 장례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조만간 社會的 副作用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례 관행과 관련한 社會階層의 심각한 分化現象은 호화결혼식, 과도한 혼수와 예단문제, 장의사와 병원영안실 문제, 호화분묘, 불법 및 무연고분묘 문제 등 가정의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社會的 弊害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가족 및 이웃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일은 참으로 감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례가 가족행사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짧은 순간의 혼주 또는 상주와의 눈맞추기를 위해 자신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의 반복은 경제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같은 가정의례의 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Ⅲ.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婚禮慣行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다한 婚需로 인한 가족내 갈등, 함값 시비, 豪華 結婚式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違和感의 심화, 예식업소의 弊害 등 혼례관행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침예화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할 부부의 결합이 물질적 財貨交流의 통로가 되고 그 결과 가족간의 갈등 증가와 가족외해까지 야기시키며, 일부 계층의 勢力誇示와 체면치레 관습등으로 인해 형식적이며 일과성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므로써 階層間的 違和感을 조성하며 사회전체의 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혼례에 관하여 이러한 물질주의적 價値觀에 의한 汚染은 혼인 당사자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의 관계자에게 까지도 파급되어, 예컨대 많은 하객들이 젊은 남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이기 보다 서로간에 부조금을 교환하고 참석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형식주의로 흐르는 세대가 이를 반영한다.

현행 혼례관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婚禮費用 支出慣行에 초점을 맞추어 혼례비용의 규모를 밝히는데 분석을 집중한다. 혼례비용은 예단, 예물, 신혼살림 마련에 드는 혼수비용과 약 혼식, 함값,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폐백 등 의례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주택비용은 별도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관행을 좇아 주택비용을 제외한 혼례비용 전반에 드는 비용을 분석하려고 한다. 단 혼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계자들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인 扶助費用을 분석에 포함한다. 이현송·배화옥(1996)에서 혼례의 구성부분별 내역 및 혼례관련 주택비용에 대한 개

략적 분석이 시도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여러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婚禮費用 總規模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는데 역점을 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례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규모의 추정은 크게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추정과 단위 결혼당의 비용 추정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의 추정은 몇 개의 기본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보수적인 추정 전략을 택하여 혼례비용의 過大推定 보다는 過小推定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구체적인 추정과정을 제시한다.

1. 婚禮件數의 推定

먼저 1년간 이루어지는 결혼건수에 대한 추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결혼식의 지연신고로 인하여 최근년도에 대한 정확한 결혼건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결혼신고자료를 근거로 집계되는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따르면 1990~1993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0만건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⁸⁾. 이중 서울지역에서는 약 10.4만건이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의 5대 광역시에서는 약 9.1만건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6대 도시에서 전체 결혼의 과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신고를 한 모든 결혼이 정식으로 혼례절차를 거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사례는 아닐 것이다. 기존 연구(박숙자, 1991)에 따르면 빈민층의 경우 정식의 혼례절차를 수반함이 없이 일단 결혼생활을 시

8) 1994년 이후의 결혼 사례수에 대하여는 미신고분이 통계에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하여 이러한 미신고분을 포함한 정확한 통계가 앞으로 산출되어 보아야 알겠으나 1993년 이전과 비교하여 큰 사례수의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혼례 총비용을 산정하는데 이들 貧民層을 제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빈민층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득평균의 50%를 기준점으로 삼거나 혹은 最低生計費 조사결과를 근거로 貧困線을 정의하는 것이 관례인데, 박순일(1994)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결과 5인가족 최저생계비가 도시근로자 소득평균의 50%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1996). 이 기준을 따랐을 때 전체가구의 약 17%가 빈곤선 이하의 가구로 파악되며, 따라서 혼례비용 계산에서도 이들을 제외하기로 할 때, 전국적으로 약 33.2만건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서울은 약 8.6만건, 5대 광역시는 약 7.6만건의 분포를 보인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조남훈 외, 1993) 서울을 포함한 6대 대도시에서 치루어지는 혼례중 80%가 일반상업예식장이고 지방의 경우 90%가 이곳에서 치루어지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각 일반예식장당 치루어지는 혼례건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 현재 전국적으로는 총 1,428개소의 일반예식장(보건복지부, 1995)이 있으며, 혼례건수를 예식장 수로 나누었을 때 각 예식장당 연간 197.9건의 결혼식을 치루는 비율이 되며 이를 다시 연간평균으로 계산하면 예식장당 매주 3.8건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지역에 국한해 볼 때 총 137개소의 일반예식장(보건복지부, 1995)이 있으며, 서울의 혼례건수를 예식장 수로 나누었을 때 각 예식장당 연간 502.2건의 결혼식을 치루는 비율이 되며 이를 연간평균으로 다시 계산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예식장당 매주 9.7건에 해당한다.

2.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하나의 부부가 탄생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 혼례비용에 대하여는 기존의 여러 조사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혼례비용에 관한 기존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表 2〉 婚禮費用的 增加推移⁹⁾

(단위: 만원)

비 용 ¹⁾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²⁾	1980년대 후반	1990	1993	1996
총 혼인비용(a)	423	1,528	1,423	2,694	3,065	3,679
남자	-	927	591	1,140	1,216	1,577
여자	-	601	832	1,554	1,839	2,102
여자/남자	-	0.6	1.4	1.4	1.5	1.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b)	39	58	105	139	172	215
a/b	10.8	26.3	13.6	19.4	17.8	17.1

註: 1) 표에 제시된 수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96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주택준비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資料: 김분옥, 『너무 벅찬 결혼비용』, 『여성동아』 36호, 1970.

저축추진중앙회, 『혼인비용 실태조사 보고서』, 1978, 1987.

_____,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1993,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혼수실태 조사결과』, 1990.

_____,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조사대상자의 수, 지역, 계층별 구분들이 조사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으나 개략적으로 위의 혼례 비용추이를 보면 혼례비용의 절대액 면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 하여도 일관

9) 개개의 조사들마다 조사대상자의 수, 조사지역, 계층별 구분 및 婚禮費用項目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조사들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推移 分析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 상승에 대비한 혼례비용 지출비율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減少趨勢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요즈음에 들어올수록 혼례비용의 부담으로 허리가 휘다는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위의 자료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혼례비용의 男女 分擔比率을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이래 남자 대비 여자의 혼례비용의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보게 된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1.3~1.5배 더 혼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랑측이 주택마련 비용을 부담하고 신부측이 살림살이를 위한 기타 준비비용을 부담하는 관례로 볼 때, 위에서 제시한 주택마련비용을 제외한 혼례비용에서 女性の 負擔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의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남성의 주택마련 비용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위 표에 제시된 1970년대 후반의 조사에서 신랑측의 주택마련 비용을 조사한 결과 남자 대비 여자의 相對的 負擔比率이 현저히 낮았던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1990년대 이래 혼례비용 조사에서 소득수준 대비 가장 적은 혼례비용의 비율인 월평균 소득의 17.1배를 혼례 총비용의 추정 근거로 이용하기로 한다. 1996년 都市勤勞者 月平均家計所得(경상가격)이 2,152,700원(통계청, 1996)으로 나타남으로 단순계산으로 전국의 1년간 婚禮에 들어간 直接費用의 총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text{혼례총비용: } 215\text{만 } 2\text{천원} \times 17.1\text{배} \times 33.2\text{만건} = 12\text{조 } 2173\text{억원}$ <p style="text-align: center;">(혼례건당 약 3680만원)</p>
--

혼례 비용에는 결혼 당사자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겠으나 주위 관련자로서 賀客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婚禮 過消費의 주요 기여요인의 하나가 하객이 지불하는 부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로 계산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 賀客 및 扶助金에 대한 기존의 조사자료는 매우 희소하다.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사에 따르면(서울방송, 1997) 혼례 한 건을 기준으로 할 때 264명의 하객(성인기준)이 평균적으로 참석하며, 이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祝意金 總額은 11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하객 1인당의 축의금으로 환산하면 약 46,000원에 해당하는 데 이는 약간 과다 추정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각 개인의 慶弔費 지출실태를 조사한 자료(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에 따르면 가족 혹은 친인척이 아닌 결혼식의 경우 1회 평균 경조비로 약 38,000원을 지출하며(이웃의 경우 33,000원)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 약 91,000원을 지출하여 평균적으로 1회에 36,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가구당 월평균 한 건의 경조비 지출 행사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다음 절에서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가구당 월 평균 경조비 지출금액인 39,000원에 근접한 액수이다. 따라서 경조비의 산출 근거로 위의 세가지 액수중 가장 작은 금액인 1인당 36,000원의 부조금 및 결혼식 1건당 264명의 하객수를 경조비 산출의 근거로 하여 전국의 1년간 혼례에 동원되는 賀客數 및 祝意金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하객수:	264명 × 33.2만건	= 8664만 8천명
축의금:	950만 4천원 × 33.2만건	= 3조 1553억 28백만원

이러한 축의금은 婚主측 입장에서는 收入인 반면 관계자들에게는 費用이므로 결과적으로 혼례 총비용 규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축의금이 전체 혼례비용의 28%에 달한

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혼식에 참가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機會費用 및 기타 間接費用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혼주측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의 돈으로 충당됨으로 하여 혼례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즉 축의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호화 혼례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축의금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비용 유발의 예로 결혼 피로연 비용을 생각해 보면 식사시간이 아닌데도 축의금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객의 입장에서도 결혼식은 보지도 않고 식당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披露宴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할까를 살펴보는 것도 이러한 관행의 문제점을 포착하기 위하여 의미있는 작업이다. 앞에서 인용한 조사자료에 따르면(서울방송, 1997) 하객 1인당 식사비용은 평균 12,000원으로 나타난다. 결혼식에 방문한 하객중 80%가 식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전국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의 피로연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text{피로연 총비용: } 264\text{명} \times 0.8 \times 12,000\text{원} \times 33.2\text{만건} = 8414\text{억원}$$

(혼례건당 253만원)

실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 중 많은 경우 미성년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식사비용을 포함하면 위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위의 금액을 기준한다 하여도 혼주측 입장에서 볼 때 扶助金으로 받은 돈 중 披露宴 費用으로 약 1/4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혼례총 비용의 7.5%에 해당한다¹⁰⁾.

10)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은 혼례 총비용을 혼수비용, 의례비용, 주택마련 비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8조 1325억원(32.2%), 4조 4864억원(17.7%), 11조 1901억원(44.35%)으로 추정하였다.

IV. 葬墓關聯 費用規模 推定

葬墓關聯 費用은 장례를 위해 필요한 수의, 관 등 장의물품과 염사의 인건비, 장례식장(병원영안실) 사용료 등을 말한다. 또한 장의자동차 서비스요금과 묘지사용료와 비석, 상석 등 부대시설의 설치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조문객 접대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葬墓費用에 관한 자료는 소비자보호원(1990),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4),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6)에서 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장묘비용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葬禮를 치루면서 지출된 總費用은 203만원(1990년 기준)으로 수의, 관, 염습 등 葬儀費用이 평균 74만이 소요되었으며, 음식비 등 조문객 접대비는 111만원, 장의자동차 비용은 18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결과 平均 葬墓費用은 665만원(1994년 기준)에 달하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최근에 조사한 장묘와 관련한 지출은 평균 741만원(1996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조사 자료는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장묘비용 응답 결과로 장례 구성요소별로 비용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여기서는 장례방법별 葬儀件數를 추정하고 장묘서비스업체의 현지 방문 확인한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장묘 구성요소별 비용을 살펴본 후 葬墓關聯 總費用 規模를 추정하였다.

1. 葬儀需要의 推定

葬禮費用의 규모를 파악을 위하여 전체 사망자 규모와 장의수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人口構造의 老齡化는 사망자 규모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장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 규모는 1990년에서 2000년의 10년동안 약 45,000명의 증가를 보이며, 2010까지의 10년간은 73,000명, 2021년까지의 11년간은 135,000명의 증가를 보여 2021년에는 1990년 사망자 규모의 두배가 넘는 493,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996년 연간 사망자수는 249,000여명으로 1일 평균 사망자수는 682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총 장례건수는 총 사망자 수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면 1일 평균 장의수요는 680여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3〉 死亡者 規模 및 粗死亡率의 推移

(단위: 명)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6	2000	2010	2021
사망자수	260,499	240,497	240,323	240,019	249,000	285,000	358,000	493,000
조사망률1)	6.7	6.3	6.0	5.8	5.4	6.1	7.2	9.8

註: 1) 1000명당 비율임.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장례비용은 장례장소와 장례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장의수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장례장소는 집에서 치루는 경우와 장례식장(병원영안실)에서 치루는 경우, 장례방법은 매장과 화장을 할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매장의 경우는 공설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 기타 사설묘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례장소 및 장례방법별 장례건수는 이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사망장소별 사망

자 비율에 기초하여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집에서 장례를 치루고 (66.0%), 병원 및 기타 장소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장례식장(병원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루는 것(34.0%)으로 가정하였다. 장례방법은 화장율 (25%) 통계를 사용하였고, 묘지사용은 각각의 분묘매장 가능기수 비율을 이용하였다. 장례장소와 장례방법별 장의수요의 추정결과는 아래 <表 4>와 같다.

<表 4> 葬禮場所와 葬禮方法別 葬禮件數(1996年)

(단위: 명, 건, %)

		장례건수	
		전국	서울
총인구수		45,247,621	10,784,968
사망자수		249,000(100.0)	37,880(100.0)
장례 장소	자택	164,340(66.0)	14,205(37.5)
	장례식장(병원영안실)	84,660(34.0)	23,675(62.5)
장례 방법	화장	62,250(25.0)	10,114(26.7)
	매장	186,750(75.0)	27,766(73.3)
	공설 공원묘지	14,193(5.7)	1,231(3.2)
	사설 공원묘지	43,824(17.6)	7,377(19.5)
	개인묘지	128,733(51.7)	19,158(50.6)

2. 葬墓關聯 直接費用 推定

장묘관련 총비용은 장의용품, 장례장소, 장례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평균적 장묘비용을 추정작업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묘관련 비용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장묘관련 구성요소별 비용규모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장묘관련 비용은 크게 장례관련 비용, 묘지관련 비용, 화장관련 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례관련 비용은 장의용품비, 장례식장 사

용비, 조문객 접대비, 장의자동차 임대료로 구분된다. 장례에 필요한 장의용품은 亡者에게 쓰이는 것과 빈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물품 그리고 유족에게 필요한 용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례식장 사용비는 병원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임대료에 시신안치료를 포함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조문객 접대비는 주로 조문객을 접대하기 위한 음료수와 주류, 과일류 등의 비용과 물품비용을 말하며, 장의자동차 임대료는 장례에 있어서 發靱地로부터 葬地까지 시신을 운구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묘지관련 비용은 묘지사용료, 관리비, 부대시설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업체가 묘지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개발비, 조경비, 축대비, 잔디비 등)과 공원묘지내 시설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부대시설비는 비석, 상석,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장묘비용 조사결과를 근거로 각 단계별 몇가지 가정을 통해 장묘관련 총비용 규모를 추정하였다. 장묘관련 총비용의 구성은 [圖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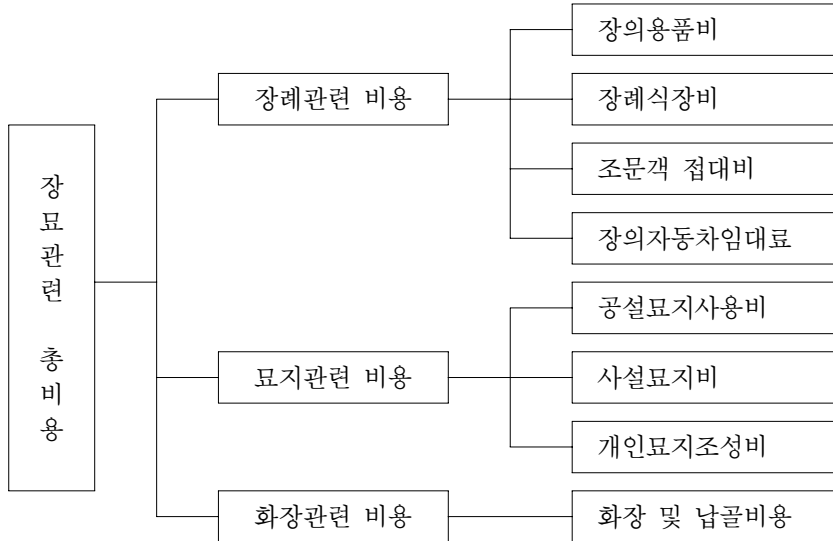
가. 葬禮關聯 費用

장례관련 비용은 장의용품비, 장례식장 사용비, 조문객 접대비, 장의자동차 임대료로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추정과정을 제시하기로 한다.

1) 葬儀用品 및 葬禮式場 費用

장의용품은 지역과 장례 풍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이며, 품질과 규격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심하다. 장의용품은 수의와 관이 주종을 이루며, 영정사진, 상복과 입관절차에서 들어가는 부속 장례물품

[圖 1] 葬墓關聯 總費用 構成



등이 사용된다. 신고가격제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주요 장의용품과 서비스에 가격을 근거로 장의업체에게 지불되는 대표적인 장의용품과 장례식장의 비용을 보면 <表 5>와 같다.

<表 5> 代表的인 葬儀費用 構成(1996年)

(단위: 만원)

품 목	상	중	하
관	120 ~ 150	60 ~ 80	10 ~ 30
수의	200 ~ 250	100 ~ 120	20 ~ 30
입관부속품(칠성판, 멧베, 명정 등)	40 ~ 60	20 ~ 30	20
기타 비용(영정사진, 향, 상복 등)	40 ~ 60	20 ~ 30	20
인건비	30	20	10
장례식장 임대료	120	60	30
조문객 접대비	400 ~ 600	150 ~ 200	50 ~ 100
합 계	950 ~ 1270	430 ~ 500	150 ~ 200

註: 병원장례식장의 장의용품 가격에 근거해 산정한 비용임.

일반적 장의용품은 수의와 관의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문객 접대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준은 관의 경우 60~80만원대이고, 수의의 경우 100~120만원대이다. 병원장례식장 임대료는 1일 기준 최저 7만원에서 최고 40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병원영안실)을 이용할 경우 보편적인 선택범위인 장의용품(중품기준) 비용은 관, 수의를 포함하여 200~280만원 정도이며, 장례식장 임대료(시신 안치료 포함)는 6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의용품 비용은 매장인 경우와 화장할 때에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매장의 경우 장의용품 비용은 보편적인 선택범위인 중품기준의 가격대를 합산하여 200만원이, 화장인 경우는 관, 수의를 비교적 저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95만원(저가품 기준)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장의용품의 연간 비용 규모는 4326억원 소요되며, 건당 장의용품비는 174만원으로 추정된다.

매장인 경우:	186,750(연간 매장건수) × 200만원	= 3735억원
화장인 경우:	62,250(연간 화장건수) × 95만원	= 591억원
건당 장의용품비:	4,326억원 / 249,000명(연간 장례건수)	= 174만원

일반적으로 병원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례식장 임대료는 7만원~30만원(1일 기준)으로 장례식장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분향소 면적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제시되고 있다. 평균적 시설을 가진 장례식장의 비용은 임대료에 시신안치료 등을 포함하여 60만원으로 가정하였다¹¹⁾. 따라서 장례식장의 연간 총비용 규모는 508억원

11) 장례식장 비용은 서민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서울 소재 병원영안실을 중심으로

으로 장례식장 이용건수에 건당 장례식장비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장례식장 총비용: 84,660건(장례식장 이용건수) × 60만원 = 508억원

2) 弔問客 接待費

조문객의 接待費用은 혼례의 피로연 비용과 마찬가지로 장례장소, 조문객의 수와 접대시 준비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다. 조문객 접대는 주로 음료수와 주류, 과일류, 전류, 떡류 등을 준비하며, 밤샘 음식으로는 주류, 장국밥류를 꼭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음식 준비는 대부분 가정에서 준비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장례식장의 식당이나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류층의 평균적인 葬禮費用은 조문객 접대비를 포함하여 480만원에서 600만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는 경우는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장의용품비와 조문객접대비가 덜 드는 것(병원장례식장 비용의 70~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 소비자보호원(1990)의 조사자료(평균 111만원)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율¹²⁾만큼 증가하였다고 가정하면 조문객 접대비는 157만원(1996년)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류층의 대표적인 조문객 접대비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택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조문객 접대비는 장소의 협소함과 집안 일손의 도움으로 장례식장 보다는 비용면에

장의업자에게 면접조사한 결과(이현승·이필도, 1995)를 기초로 평균비용을 가정한 것이다.
 12) 전도시소비물가지수는 1990년(=100)을 기준으로 1996년은 141.8이다.

서 20%정도 덜 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조문객 접대비
용 규모를 추정하면 연간 3383억원 정도 소요되며, 장례 1건당 조문
객 접대비는 136만원으로 나타난다.

장례식장의 경우:	84,660건(장례식장 이용건수) × 157만원	= 1329억원
주택의 경우:	164,340건(주택 장례건수) × 125만원	= 2054억원
건당 조문객 접대비:	3383억원 / 249,000건	= 136만원

3) 葬儀自動車 서비스 費用

장의자동차 임대료는 장례에 있어서 發靱地로 부터 葬地까지 시신
을 운구해 주고 받는 서비스 요금이다. 1995년 이전까지는 관계당국
의 고시제에 의한 장의자동차의 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葬地距離에
따른 추가요금과 대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6년에는 신고제
로 전환되었으며, 현재에는 장의자동차 업체가 거리에 따라 자율적으
로 정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 장의자동차 서비스비용은 서울을 기준
으로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257,000원, 원근 경기도 지역은 350,000원,
충청도 지역은 439,000원 등 거리에 비례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장의자동차 서비스 비용은 공식요금 이외에 소위 노잣돈(기사 수고
료)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되는 비용이 慣行化되어 있다. 장의자
동차의 경우는 실수요자인 상가와외의 직접계약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대부분이 일반장의업체 및 병원장례식장의 알선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장의운송업자는 過多競爭으로 장의업자에게
件當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경우가 慣例化되어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
와 직접 접촉하는 장의차 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轉
嫁되고 있다.

장의자동차 임대료는 기본운임, 거리운임, 대기료를 포함하여 장의자동차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대인 300,000원(평균 장지와 왕복거리 200km 기준)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관행인 노갯돈(기사 수고료)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건당 장의자동차비용: 150,000원(기본) + 5,000원×200km(거리) + 5,000원 ×10시간(대기료) + 10만원(기사 수고료) = 40만원 장의자동차 비용: 249,000건 × 40만원 = 996억원

따라서 葬禮費用의 總規模는 장의용품비, 조문객 접대비, 장의자동차 임대료, 장례식장 사용비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9213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장례 1건당 장례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370만원이며,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4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자택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는 병원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보다 비용이 덜 들어 339만원인(장례식장 비용의 79% 수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焚香所 사용료와 시신 안치료가 들지 않는 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으나, 장의용품과 조문객 접대비의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 墓地關聯 費用

‘埋葬과 墓地 등에 관한 法律’에서 정의한 묘지는 사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市·道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묘지는 관리주체, 설치목적, 그리고 집단여부에 따라 <表 6>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오랜 전통과 관습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묘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表 6〉 墓地類型的 分類

관리 주체	집단 여부	묘지 유형	
공설 묘지	집단 묘지	공원 묘지	공설 공원묘지
			사설 공원묘지
사설 묘지	개별 묘지	기타 사설묘지	단체 묘지
			중중 묘지
			가족 묘지
			개인 묘지

資料: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886호)

墓地는 運營主體別로 公設公園墓地와 私設公園墓地로 구분할 수 있다. 공원묘지는 관리방법에 따라 설치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접 관리방식과 공공기업체사업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방식, 그리고 일반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私人管理方式으로 나눌 수 있다. 공설공원묘지는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분양가격이 저렴하여 이용율이 높으나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매장을 할 경우 드는 비용인 묘지관련 비용은 묘지유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에서는 공설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 기타 개인묘지로 구분하여 묘지관련 비용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1) 墓地 購入費

우리나라 장례방법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함에 따라 묘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묘지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묘지 구하기가 어렵고 이는 묘지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먼저 공설공원묘지의 경우 묘지사용료(또는 분양가)와 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고, 사설공원묘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상

한선을 고시하고 있다. 공원묘지의 사용료는 사업체가 묘지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개발비, 조경비, 축대비, 잔디비 등)과 공원묘지내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법인이 사용자의 개별 묘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실상 사용료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이나 분묘설치 후 묘지의 계속적 관리를 위해 징수하고 있다. 관리비 징수방법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시 일괄 징수하여 영구기금화하는 관리기금제와 매년단위로 평당금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연납제 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사용료(또는 분양가)의 상한선을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관리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그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묘지사용에 대한 영구연한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

시설공원묘지에 분묘를 쓰는 경우 일정한 계약양식이 없으므로 업체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와 이용자간의 상세한 권리의무를 명시한 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간단한 주의사항만을 기재한 분양계약서 또는 사용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있어 이용자가 진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³⁾.

묘지조성의 부대시설은 종류와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사업체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를 알선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거래관행은 병원장례식장의

13) 이러한 계약의 진정한 내용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함. 분묘사용권은 관습상 분묘기지권이라 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설치 분묘에 대해 소유권이든 사용권이든 관습법상 보호를 받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사전계약 즉 분묘계약에 있어서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으로 사업체가 임의로 위치변경을 하는 등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업과 동일한 셀트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묘지작업시 인건비와 기타 부대비용에서도 노잣돈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대시설비(비석, 상석, 인건비 등)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사용계약시 일괄적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 묘지관련 부대시설 이용은 결혼식장 이용시 끼워팔기 형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불만이 많다. 또한 이들 비용이외에도 장례 당일 작업비 등 인건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表 7〉 代表的인 墓地費用 構成(1996年)

	묘지 사용료	관리비	부대시설비	비고
서울시립공원묘지	조성묘지 280,000/2평 비조성묘지 65,700/3평	44,200/3년	비석 등 824,000 작업비 327,000 잔디 등 62,000	2평기준 총금액 160만원
부산시립공원묘지	60,000/평	140,000/5년	-	95년 3월 고시
대구시립공원묘지	35,000/1.5평	29,000/1년	비석, 인건비 포함 133,000	
사설공원묘지(A)	349,000/평	5년 관리비	-묘테, 비석, 상석 등이 포함됨. -묘테, 비석, 상석 등 별도 구입함. 부대시설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임.	5평기준 347만원 6평기준 450만원 3평기준 150만원
사설공원묘지(B)	442,000/평	15년관리비		
사설공원묘지(C)	130,000/평	4,000/1년		

資料: 전국공원묘지협회, 내부자료, 1996.

공설묘지의 묘지사용료는 평당 16,000~140,000원이고, 사설묘지는 130,000~450,000원으로 공설묘지보다는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14)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는 물가상승률 감안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인 가격체제로 부대시설의 끼워팔기 등을 통해 업계의 수지를 맞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있다. 공원묘지의 연간관리비는 4,000~30,000원 정도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실제묘지사용에 드는 비용을 보면, 공설공원묘지의 경우 160만원(2평 기준) 정도이고, 사설공원묘지는 450만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 공설공원묘지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은 묘지사용료와 관리비, 그리고 부대시설비를 포함하여 산출된 평균금액이어야 한다. 공설묘지의 묘지사용료는 평당 16,000~140,000원이고, 연간관리비는 4,000~30,000원 정도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실제 묘지사용에 드는 비용을 보면 160만원(2평 기준)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실제공설묘지 사용비용인 160만원(2평 기준)을 적용하고, 공설공원묘지 연간 매장건수에 1기당 묘지비용을 곱하여 공설묘지 비용규모를 산정하였다.

$$14,193(\text{연간 매장건수}) \times 160\text{만원}(1\text{기당 묘지비용}) = 227\text{억원}$$

나) 사설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는 묘지관리비 및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묘지사용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사설공원묘지는 130,000~450,000원으로 공설묘지보다는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설공원묘지 1기당 평균 450만원으로 가정하고 사설묘지비용을 산정하였다.

$$43,824(\text{연간 매장건수}) \times 450\text{만원}(1\text{기당 묘지비용}) = 1972\text{억원}$$

다) 개인묘지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개인 및 문중소유의 林野 또는 田인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여기서는 사유지 구입가격을 제외한 묘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부대시설비를 감안하여 개인묘지 1기당 조성비용을 270만원(12평 기준)으로 가정하고 개인묘지 조성비용을 산정하였다.

128,733(연간 매장건수) × 270만원(1기당 묘지조성비) = 3476억원
- 1기당 묘지조성비
· 부대시설비(비석, 상석 등) : 800,000원
평당 작업비 : 150,000 × 12평 = 180만원
기타 비용 : 100,000원

이를 종합해 보면 묘지비용의 연간 총규모는 5675억원이며, 1기당 묘지사용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304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火葬關聯 費用

火葬을 할 경우 비용은 墓地使用料 및 管理費가 들지 않으므로 매장의 경우보다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관, 수의 등 장의용품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묘지사용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료와 納骨堂 사용료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설화장장의 경우 건당 화장료가 15,000~90,000원이며, 납골보관료는 15,000~120,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私設火葬場은 이보다는 약간 비싼편이다. 따라서

화장관련 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건당 5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2,250(\text{연간 화장건수}) \times 50\text{만원}(\text{건당 화장비용}) = 311\text{억원}$$

이상을 종합하여 장례, 묘지 관련 年間 葬墓費用의 총규모는 약 1조 5199억원에 달하며, 이를 건당 장묘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埋葬의 경우 건당 평균장례비용은 667만원으로 나타났다으며, 火葬의 경우는 매장비용의 60% 수준인 381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장묘관련 비용중에서 장례관련 비용이 6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조문객 접대비는 22.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지관련 비용은 37.4%를 차지하며, 이중 개인묘지 조성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8〉 葬墓 構成要素別 費用

	건당 비용(만원)	총비용(억원)	구성비(%)
총 계	610	15,199	100.0
- 장례관련 비용	370	9,213	60.6
· 장의용품비	174	4,326	28.4
· 조문객접대비	136	3,383	22.3
· 장의자동차비	40	996	6.6
· 장례식장비	60	508	3.3
- 묘지관련 비용	304	5,675	37.4
· 공설공원묘지	160	227	1.5
· 사설공원묘지	450	1,972	13.0
· 개인묘지	270	3,476	22.9
- 화장관련 비용	50	311	2.0

V. 慶弔費 支出 分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相互扶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데 특히 혼례 및 상례와 같은 가정의례에서는 金錢的 扶助와 感情的 慰安을 통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아 왔다. 개인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선 그 일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남을 도울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책임의 정도를 고려 한 후, 다른 사람을 돕는 친사회적 행위에 따르는 비용과 보상을 평가하여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최현숙, 1990).

우리나라의 상호부조 유형은 血緣이 최우선이며, 도시화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지연 중심에서 學緣과 職緣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학연과 직연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집단이므로 합리적, 계약적,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상호부조의 기능도 점차 個人主義的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부상조의 의미로 주고 받던 상호부조금이 일부 계층의 지위나 권력의 誇示手段과 사회적 연결망의 擴張手段으로 변질되어 혼례 및 장례가 형식적이며 낭비적 경향으로 흘러 사회적 위화감의 조성이라는 逆機能的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1. 慶弔費의 形態

본 연구에서는 慶弔費를, 타인의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慶弔金과, 본인이 주관하는데 드는 冠婚喪祭費로 구분하고자 한다. 경조비는 다시 결혼식, 돌·백일잔치, 회갑·칠순잔치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식에 내는 조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혼상제비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치르게 되는 통과의례인 출생의례, 혼례, 상례, 제례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관혼상제비에는 돌·백일잔치, 결혼식, 장례식, 제사 비용 이외에 회갑·칠순잔치 비용이 포함된다.

冠婚喪祭費는 보통 범위가 가족 및 친척에 국한되고 횟수는 적으나 한번에 드는 비용이 큰 반면에, 경조비는 한번에 드는 금액은 적으나 가족과 친척, 직장동료, 이웃 등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경조비의 성격이 왜곡되어 가계에 주는 부담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광의의 경조비중 타인의 慶弔事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慶弔金에 분석을 집중시키기로 한다¹⁵⁾.

경조비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나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경조비 또는 관혼상제비의 지출규모와 지출특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경조비의 지출규모 및 지출특성을 규명하고자 통계청의 1996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72개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전국적인 표집을 하고 있으나,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¹⁷⁾, 특히

15) 관혼상제비의 경우 도시가계조사에 별도의 항목으로 나와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제사, 잔치 등의 가족행사에 쓰인 모든 비용이 총괄적으로 관혼상제비로 기록되지 않고 식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 기재되기 때문에 관혼상제비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혼상제비 분석을 제외하기로 한다.

16) 저축추진중앙위원회는 1994년 전국 6대 도시, 1997년 전국 11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20~59세)를 대상으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구별하여 『경조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6)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조의금에 대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음.

농어촌가구가 누락되어 있어 전국적인 慶弔費 支出規模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가구 가운데 소득의 파악이 어렵고 편차가 심하여 경조비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직종인 자영업자, 개인 또는 법인 경영자, 자유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구에만 초점을 두어 慶弔費 支出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경조비 항목은 있으나 祝意金과 弔意金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통합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결혼식, 장례식, 잔치 등 목적별 그리고 대상별 경조비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가계조사 자료로서는 1회 평균 경조비 지출금액과 연간 평균 慶弔事 參席回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경조비를 분석함에 있어 1996년 도시가계조사는 약 5,5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가구 총 3,935가구를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2. 慶弔費 支出規模와 特性

가. 慶弔費의 支出規模와 推移變化

1) 支出分布

1996년 도시근로자가구는 매월 평균 약 39,300원, 연간 472,000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2,152,700원)의 1.83%에 해당되며, 또한 가계소비지출 전체액수(1,395,400원)의 약 2.82%에 해당한다. 이같은 慶弔費 支出規模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7)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 주택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 또는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를 말한다(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 p.3).

(1997)가 조사하여 얻은 결과인 월평균 37,000원을 상회하고 있다¹⁸⁾.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勤勞者家口가 지출한 慶弔費 規模는 매월 39,300원이나, 조사 기간 1년동안 경조비를 전혀 지출하지 아니한 가구(13.5%)를 제외하면 가구당 매월 평균 45,500원으로 연간 546,000원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에는 경조비 지출이 어려운 노인가구, 모자가구 등도 근로자가구에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평균 경조비 지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통가구의 慶弔費 負擔은 실제로 연간 54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表 9〉 月平均 慶弔費 支出分布

(단위: 원, %)

전체 평균	지출 없음	지출있음 ¹⁾					
		평균	1만원 미만	1~3만원	3~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39,300 (100.0)	13.5	45,500 (100.0)	16.9	30.7	20.3	22.0	10.1

註: 1) 경조비 지출이 있는 가구비율은 86.5%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조사기간 1년동안 경조비 지출이 있는 가구만을 고려하였을 때, ‘10,000원 미만’이 16.9%, ‘10,000~30,000원 미만’이 30.7%, ‘30,000~50,000원 미만’이 20.3%, ‘50,000~100,000원 미만’이 22.0%, 그리고 ‘100,000원 이상’이 10.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과반수를 넘는 52.4%가 매월 30,000원 이상의 경조비를 지출하고 있다. 현재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서 한 번의 慶弔費 規模가 30,000원이 보통인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월평균 1회 이상의 경조비 지출을 하고

18) 1년 평균 경조사 참석회수는 11.7회이며 1회 평균 경조비는 38,000원으로 월평균 37,000원이 된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경조비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7, pp.13~14).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월 100,000원 이상 즉, 연간 120만원 이상의 過度한 慶弔費를 부담하는 경우도 경조비 부담 전체가구중 10.1%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율임을 보여준다.

이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국의 全體 慶弔費 支出規模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가구의 연간 경조비 472,000원에 1995년¹⁹⁾ 전체 도시가구중 2인 이상의 가구수(8,850,000)를 곱하면 약 4조 2천억원이며, 농촌가구의 연간 추산 경조비 407,800원²⁰⁾에 전체 농촌가구중 2인 이상의 가구수(2,465,000)를 곱하면 1조원으로, 합계 약 5조 2천억원에 이른다.

도시지역: 연 472,000원 × 8,850,000가구	≃ 4조 1772억원
농촌지역: 연 407,800원 × 2,465,000가구	≃ 1조 52억원
총계:	≃ 5조 1824억원

물론 이같은 推算에는 몇가지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가구의 평균 경조비 지출금 산정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자의 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한 점, 둘째,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경조비 지출금을 家計支出對比方式으로 농촌가구에 적용한 점, 셋째, 1인 가구의 경조비 지출규모를 計上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정들 중 첫째와 둘째의 가정이 전체 경조비 추정 규모를 확대시킬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셋째의 가정이 전체 경조비 규모를 縮小 推定하도록 하는 점만은 분명하므로 위에서 추정한

19) 1996년도 도시가구수 및 농촌가구수를 구득치 못하여, 1995년도 가구수를 이용하였음. 1995년도 전체 도시가구(10,034,000) 가운데 2인 이상의 가구비율은 88.2%이고 전체 농촌가구(2,927,000) 가운데 2인 이상의 가구비율은 84.2%임(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20) 1995년도 도시가계지출(1,425,800원) 대비 농촌가계지출(1,231,824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4%임. 경조금 지출도 이 비율에 준하여 산정하였음(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6).

전국의 경조비 규모는 실제의 규모보다 축소되어 추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다 명확한 경조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직종별, 가구특성별 慶弔費 및 冠婚喪祭費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한편 도시가계조사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조비는 경조사의 종류보다 慶弔 對象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조 대상별 1회 평균 경조비는 친지 42,000원, 직장동료 37,000원, 이웃 34,000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례식 41,000원, 회갑·칠순잔치 39,000원, 결혼식 36,000원, 돌·백일 34,000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14).

2) 季節的 推移

다음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조비 평균 지출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았다. <表 10>을 보면 예상한 대로 늦가을과 봄철²¹⁾이 가장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表 10> 分期別 平均 慶弔費 支出分布

(단위: 원)

연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전체
경조비	40,800	43,600	25,600	55,000	39,300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장례식, 회갑·칠순잔치, 제사 등은 특정 달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므로, 위 표와 같은 계절적 변동은 대체적으로

21) 상용적으로는 3월, 4월, 5월을 봄, 6월, 7월, 8월을 여름, 9월, 10월, 11월을 가을, 그리고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1996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편의상 분기별로 나누었음.

혼례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結婚式이 忌避되는 계절인 여름철(3사분기)과 결혼식이 集中되는 가을 및 초겨울철(4사분기)과의 경조비 지출규모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3) 지난 10年間の 推移

〈表 11〉은 19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慶弔費의 增加 推移를 보여준다.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의 경조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절대금액에 있어 6.5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消費者物價上昇을 감안하여 1995년도 不變價格으로 환산하였을 때, 10년동안 1.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표는 또한 경조비에 관한한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의 씀씀이 규모가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서도 연평균 7.6%씩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경조비 지출 규모 그 자체의 증가는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에서 慶弔費가 차지하는 比率을 비교해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이 관찰된다. 月平均 所得 對比 慶弔費 支出率은 1985년 1.2%였던 것이 1996년 1.9%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소비지출 대비 경조비 지출률은 1.6%에서 2.9%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 뚜렷한 양상은 최근에 이르러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1993년 전까지 경조비 지출률은 연평균치에 준하다가, 1994년 이후 최근 3년 동안에는 월평균 소득의 약 2%, 소비지출의 약 3%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경조비 지출의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전반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우려임을 입증한다.

〈表 11〉 年度別 月平均 慶弔費 推移

(단위: 원, %)

연도	경조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소비지출액	
	경상금액 (a)	1995년도 불변가격	증가율 ²⁾	경상금액 (b)	a/b	경상금액 (c)	a/c
1985	5,500	20,400	-	456,800	1.2	338,800	1.6
1986	6,000	21,000	2.9	481,000	1.2	339,000	1.8
1987	6,600	21,600	2.9	561,700	1.2	388,300	1.7
1988	7,800	23,100	6.9	657,200	1.2	453,900	1.7
1989	10,500	24,500	6.1	804,900	1.3	561,700	1.9
1990	12,900	26,600	8.6	943,300	1.4	650,000	2.0
1991	16,000	29,000	9.0	1,158,600	1.4	779,600	2.1
1992	20,900	30,900	6.6	1,356,100	1.5	902,500	2.3
1993	22,400	32,300	4.5	1,477,800	1.5	986,200	2.3
1994	30,900	34,400	6.5	1,701,300	1.8	1,113,700	2.8
1995	35,900	35,900	4.4	1,911,100	1.9	1,230,600	2.9
1996	41,100 ¹⁾	37,700	5.0(14.5) ³⁾	2,152,700	1.9	1,395,400	2.9
1985 ~1995			연평균 7.6		연평균 1.5		연평균 2.2

註: 1) 1996년도 경조비의 절대금액은 통계청이 조사한 총 5,233가구에 대한 조사결과임.

2) 1995년도 불변가격의 증가율임.

3) ()의 수치는 실제 조사금액의 증가율을 계산한 것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_____, 『한국주요경제지표』, 1997. 3.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로서는 1회 평균 경조비 지출금액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 못하나,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 의하면 1994년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연평균 14.0회이며 1회 평균 경조비가 32,200원임에 비해, 1997년 경조사 참석횟수는 연평균 11.7회로 줄고 1회 평균 경조비는 38,000원으로 증가하여 해당 연도의 도시가계조사 결과와 유사한 동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 慶弔費의 絕對金額 및 소득 및 소비규모 대비 相對比率이 증가된 것은 경조사 참석횟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1회 平均 慶弔費의 增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과 대비하여 1회에 지출하는 경조비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소비지출의 확대를 넘어 誇示消費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즉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경조비를 상승 지출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지출을 높이는 왜곡된 사회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 慶弔金의 支出特性

1) 所得·消費와의 關係

소비지출항목의 하나인 경조비의 규모는 무엇보다도 소득 및 여타 소비지출 규모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다. 앞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중 경조비는 월평균소득의 1.83%를 차지하고 소비지출의 2.82%를 차지함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경조비 지출도 많이 할 것이지만 소득 및 여타 소비지출 규모와 비교할 때의 상대적인 비율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예상이 타당한 주장임을 지적하고 있다.

〈表 12〉를 보면 총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慶弔金의 經常金額도 비례적으로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총소득에서 경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소득규모가 적을수록 오히려 경조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조비 부담률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1.5%에 달하나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1.0%로 나타난다.

慶弔金과 全體 消費支出 規模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150~200만원의 지출 규모를 가진 가구의 경우 경조비는 전

체 소비지출의 3.3%에 달한다. 반면 소비지출 규모가 매우 작거나 혹은 매우 큰 경우 경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5%이다. 여기에서도 부자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보다 경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은 작음을 볼 수 있다.

〈表 12〉 慶弔費 支出分布

	가구 구성비 (%)	경조급	
		평균(원)	% ¹⁾
총소득수준별			
50만원 미만	0.3	0	0.0
50~100만원 미만	3.0	12,600	1.5
100~150만원 미만	9.5	18,900	1.5
150~200만원 미만	14.2	22,400	1.3
200~250만원 미만	13.7	30,700	1.4
250~300만원 미만	11.9	33,400	1.2
300만원 이상	47.4	54,400	1.0
전 체		39,300	1.1
소비지출수준별			
50만원 미만	3.7	10,400	2.5
50~100만원 미만	34.6	22,100	2.8
100~150만원 미만	32.8	37,500	3.1
150~200만원 미만	15.5	54,300	3.2
200~250만원 미만	6.2	72,700	3.3
250~300만원 미만	3.6	82,300	3.0
300만원 이상	3.6	85,700	2.1
전 체	100.0	39,300	2.9

註: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경조비 부담률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2) 家口主의 社會經濟的 特性과의 關係

경조비의 지출규모를 각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과 기타 도시간의 뚜렷한 地域的 差異를 볼 수 있다. 서울이 전국의

다른 도시들보다 경조비의 지출수준이 1.2배나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로는 서울 사람들의 所得水準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경조사 횟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것으로 짐작되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타지역에 비해 경조사 횟수가 많아져서 지출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과 관련하여 過費用을 유도해내는 商業的인 文化環境이 마련되어 있어 경조비의 규모도 따라서 커지는 것도 또다른 이유일 것이다.

家口主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경조비 지출이 훨씬 높다. 이는 사회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는 남자들이 慶弔事에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참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年齡別로 살펴보면 50대까지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경조비 지출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의 경우 월 69,900원을 경조비로 지출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월 60,6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다음으로 높은 경조비 지출규모를 보이는 40대의 경우 36,900원을 지출하여 50대 및 60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社會活動의 範圍가 점차 넓어져 50대에 들어 가장 광범위한 人的 關係網을 형성하며, 이 연령층에 이르면 어느 정도 직위가 높아져서 이에 상응하여 경조비의 금액부담이 증가하는 때문일 것이다. 또한 60대에 경조비 지출규모가 적지 않은 것도 자녀들의 결혼이 50~60대에 집중되게 되어, 자녀의 결혼식에서 받은 부조금에 대한 交換行爲로서 자신이 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해야하는 관행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대 및 40대의 경조비 지출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아직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50대 이상과는 달리 부조금의 상호교환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表 13〉 家口主의 社會經濟的 特性別 慶弔費 支出分布

(단위: 원)

		경조비
지역별	서울	45,300
	기타 도시	37,700
성별	남	41,900
	여	27,200
연령별	29세 이하	28,300
	30~39세	33,100
	40~49세	36,900
	50~59세	69,900
	60세 이상	60,600
교육수준별	고졸 미만	36,500
	고졸 이상 대졸 미만	36,800
	대졸 이상	48,400
직업별	공무원	64,400
	사무종사자	43,400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35,500
	일용노무자 및 임시직	28,400
가구유형별	일반가구	37,100
	맞벌이가구	48,500
전 체		39,300

教育水準別로 보면 경조비 지출에 있어 대학졸업자와 비졸업자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나 고졸자와 고졸 미만자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教育水準과 所得 및 人間關係網의 범위 간에는 相關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졸자의 경우 고졸 미만자와 경조비 지출규모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러한 의문은 경조비가 연령 및 교육수준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각 연령대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경조비의 지출 규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表 14〉 家口主의 年齡 및 教育水準別 慶弔費 分布

(단위: 원)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 미만	22,500	27,000	59,300	46,200
고졸 및 대졸 미만	29,500	38,400	80,700	59,700
대졸 이상	39,900	56,600	80,800	131,000
전 체	31,500	36,900	69,900	60,600

예상한 대로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조비의 지출규모가 증가함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조비 지출양상은 年齡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위의 표를 보면 教育水準에 따른 慶弔金 支出規模에 있어 크게 40대 미만과 40대 연령층, 50대 연령층, 60대 이상의 연령층의 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4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고졸 여부 및 대졸 여부에 따라 경조비 지출규모에 큰 격차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관되게 경조비 지출규모도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50대 연령층의 경우 대졸 여부는 경조비 지출규모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반면, 고졸 여부는 경조비 지출규모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60대 이상의 경우 경조비 지출규모는 대졸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2배 이상이나 큰 격차가 나며, 타 연령대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50대 이상의 경우 고졸 여부가 社會的 進出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 결과 경조비 지출규모에 있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대적으로 볼 때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 구성비율은 적지만²²⁾, 社會的 地

22)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도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1% 미만을 차지함(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位 및 所得수준에서 最上層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人間的 關係網이 매우 넓을 것이므로 대졸 미만의 동년배들에 비하여 경조비 지출이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으로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 여부가 慶弔金 支出 格差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학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다²³⁾.

경조비 지출은 職業類型에 따라 확연한 격차를 보여준다. 公務員을 비롯하여 事務職에 종사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 집단이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技能工 및 勞務者로 구성된 ‘블루칼라’ 직업집단에 비해 평균 1.4배²⁴⁾나 많은 경조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및 사무직 종사자들이 육체 노동자들에 비해 안정된 조직생활을 영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경조비 지출이 매월 평균 64,000원 이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그 지출금액도 큰 것은 놀랄만하다. 이는 현재의 왜곡된 慶弔金 文化를 善導하고자 할 때 공무원 집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상임을 암시해 준다.

都市勤勞者家口를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대별하였을 때, 맞벌이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경조비 지출이 1.3배나 높다. 이는 경조비 지출이 가구 구성원들의 社會活動의 범위와 비례함을 의미한다.

23) 조사가구주의 평균 학력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훨씬 높아짐. 대졸 이상의 학력은 30대 이하의 28.2%, 40대의 16.8%, 50대의 12.7%, 60대 이상의 13.3%를 차지하며 고졸 미만의 학력은 30대 이하의 12.5%, 40대의 40.9%, 50대의 50.8%, 그리고 60대 이상의 65.3%를 차지함(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24) 공무원 및 사무직종의 매월 평균 경조금은 48,200원인데 반해, 임시고용자 등의 노동직종의 매월 평균 경조금은 33,800원임.

VI. 結 論

1. 家庭儀禮費用의 問題點

가정의례와 관련된 비용문제는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원인과 해결방법이 다르게 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과 개방화의 영향으로 소비수준이 매우 높아져 過消費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과소비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여러 가지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가정의례가 高費用化 되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요인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인은 가정의례관련 서비스 주체와 가족구성원이 관여하여 만든 요인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측도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이다. 가정의례 비용문제에 대한 접근은 가정의례비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속성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서 부터 출발한다. 가정의례에 있어서 비용문제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게 소비하는 過消費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위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하는 誇示消費(conspicuous consumption) 문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²⁵⁾

본 연구를 통해 추계한 家庭儀禮의 直接費用을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례의 경우, 우리나라 연간 葬墓費用의 총규모는 약 1조 5,199억원에 달하며, 이를 건당 장묘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1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埋葬의 경우 건당 평균장례비용은 667만원으로 나타났다. 火葬의 경우는 매장비용의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381만원

25) 일반적으로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과시소비는 과소비의 주된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장묘관련 비용중에서 葬禮關聯 費用이 6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弔問客 接待費는 22.3%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묘지관련 비용은 37.4%를 차지하며 개인묘지 조성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혼례의 경우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12조 2천억원이 婚禮費用에 소요되며 이는 혼례건당 약 3,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례의 경우 扶助金으로 인한 폐해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비난을 반영하듯이 혼례관련 부조금으로만 3조 1천억원이 교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서 지출되는 피로연 비용으로만 8,414억원에 혼례 건당 평균 253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家口당 慶弔費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 도시가계의 경우 경조비로 월평균 39,3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 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체 가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慶弔事 扶助金으로 5조 2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경조비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50~60대에는 월평균 6~7만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고 있다. 직업별로 구분하였을 때 公務員의 경우 경조비 지출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월 평균 64,000원을 경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50대의 대졸 공무원의 경우 경조비 지출이 월 76,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의례 비용 금액의 증가는 소득증가 수준보다는 낮고 일부 가정의례는 간소화되는 경향이 보이는 등 최근의 家庭儀禮 行態는 긍정적인 변화의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정의례 비용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가정의례의 비용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정의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및 구성내역에 있어 健全化가 요망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혼례의 경우 연간 12조 2천억원이 婚禮費用에 소요되고 있으며 扶助金으로만 3조 1천억원이 교환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政府 豫算의 1/7이 혼례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례의 경우에도 연간 1조 5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특히 조문객 접대비와 묘지관련 비용의 절감이 요구된다.

둘째, 虛禮虛飾의인 가정의례관행의 배경에는 體面文化의 전반적 확산이 작용하고 있다. 혼례를 포함한 가정의례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세력과 시 및 체면유지, 그리고 경조비 지출에 있어서도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호화 및 과다혼수, 호화분묘, 과도한 경조비 지출 등의 행위 양상을 띠고 있다. 체면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는 慶弔金 授受慣行을 보면, 혼례를 포함하여 장례, 돌·회갑잔치 등 가족 및 이웃·친지의 관혼상제에 지출하는 경조비 규모가 전국적으로 연간 5조 2천억원에 이르며, 조문객 접대비가 장묘비용중 22%나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 경조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의 2%, 가구당 소비지출의 3%까지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이 적은 집단이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고소득집단이 지출하는 경조비 만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전반적인 과소비 분위기의 영향으로 가정의례 행사가 浪費性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소비의 고급화, 대형화 경향은 예단, 신혼여행, 신혼살림비용과 장의용품 및 묘지관련 비용 등 高額의 家庭儀禮費用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가정의례 비용조달에 있어서도 相互扶助金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회적인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의례비용 지출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請牒狀 및 訃告狀의 濫發로 참석자에게 심적, 물적을 부담을 주게된다.

한편 최근에는 주말마다 예식장의 혼인하객이 집중되어 주변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交通混雜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²⁶⁾

넷째, 가정의례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무분별한 商業主義的 競爭 심화로 가정의례 행사의 각종 儀式과 節次가 갖는 본래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는 반면 물질적 이익과 비용적인 요소로서 그 의미가 남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일생의 단 한번 또는 자식된 도리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생의 한번 또는 가족의 중대사이므로 비용에서는 다소 무리를 해도 좋다는 認識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전반적인 고급화, 대형화의 過消費風潮 현상과 중산층의 模倣心理, 가정의례 서비스 업체의 物質主義 및 商業主義와 맞물려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례의 비용문제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價値觀의 定立되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가정의례와 관련된 문제해결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례 관련 이해집단들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2. 家庭儀禮의 高費用構造 改善方案

가정의례는 문화, 종교, 관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의례 관행의 변화를 社會變動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制度改善은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국민들의 정서에 적절한 대응과 共感帶 形成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

26) 강승필(1995)의 연구에 의하면 주말 결혼식 하객에 의한 교통혼잡비용은 1일 6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가정의례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가정의례문화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가정의례의 高費用構造 改善을 위한 정책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健全 婚禮모델의 實踐方案

본 연구에서 혼례 비용이 과다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우선 신랑측과 신부측간의 費用分擔構造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신랑측에서 주택마련비용을 부담하고 신부측에서 혼수, 살림살이 및 기타 혼례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의 비용분담구조에서 주택마련 비용을 제외한 혼례비용은 당연히 住宅費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주택비용의 양등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며, 새로운 살림을 꾸미는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의 집에 얹혀살던 혹은 따로 나와 살던 자신의 주택마련을 위한 現在的 혹은 潛在的 費用의 규모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주택 비용이 경감되지 않는 한 주택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신부측의 비용부담은 경감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에서의 해결책은 신부측에서 주택마련 비용에 일조하고 대신 예단, 혼수, 살림장만 등의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신랑과 신부사이에 주택마련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男女間의 費用分擔構造를 改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전반적인 社會運動을 통하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혼례관련 문제점의 소재는 앞서도 강조하였듯이 사회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있다. 중류층 집단은 강렬한 계층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에서 상류층의 관습을 모방하려는 경향 또한 매우 강하다. 따라서 건전한 혼례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변화가 없이는 건전 혼례모델을

위한 방안이나 사회운동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정부관료의 규모나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정부관료에서부터 건전한 혼례의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혼례모델의 확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健全한 喪葬禮의 規範 設定

喪葬禮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體面文化와 자신의 사회경제적 勢力誇示, 그리고 남의 耳目을 의식하여 과다한 장의 용품 및 조문객 접대비용, 호화분묘, 과다한 부조금 지출 등 상장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社會的 弊害가 발생하고 있다. 허례허식적인 상장례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의 중·상류층이상의 계층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사회관행이 상류층으로 시작되어 이들 慣習을 模倣하려는 경향에서 일반화가 비롯됨으로 상장례와 관련하여 호화, 사치, 낭비적인 영역이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유효한 방안은 社會指導層 및 公職者를 대상으로 외적 판별 가능한 영역에 대한 健全 喪葬禮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規範化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新聞訃告 행위를 금지하고 상장례 행사에 가족, 친척, 고인의 친지만이 참석한 가족행사가 되도록 한다. 둘째, 영전 및 묘소의 花環 陳列의 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낭비를 없앤다. 셋째, 친인척이외의 扶助金 授受行爲를 절대 금하도록 한다. 넷째, 火葬 및 家族納骨墓地 사용 권장책 등을 들 수 있다.

매장으로 인하여 국토 잠식에 따른 우려는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매장시의 장묘비용은 엄청난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의 이용효율 측면에서나 장묘문화의 비용 간소화의 측면에서나 火葬 慣行이 擴散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진

다. 현재 전국의 火葬場 이용이 저조한 이유의 큰 부분은 화장과 관련된 사회적 通念이 매우 부정적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산출의 주요 원인은 火葬施設 및 納骨堂 등의 관련시설이 현대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과거 화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화장장을 公園化 시키는 등의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과 같은 화장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화장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投資 및 對國民 弘報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중인 우리 고유의 매장풍습과 현대의 화장추세를 접목시킨 韓國型 家族墓地의 경우 사회적인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 묘지의 경우 바쁜 도시사회의 생활속에서 친족들이 성묘를 겸하여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 등으로 중산층에서 특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화장관련 시설 정비 및 묘지 문화의 선도적 개선을 통하여서만 埋·火葬 文化의 합리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전한 상장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중인 ‘埋葬과 墓地등에 관한 法律’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묘지 사용 면적, 사용기간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준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無緣墳墓整備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장 및 납골시설을 확충하여 보편화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장묘관련 비용규모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다. 慶弔金 授受慣行의 改善

사회적 영향을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하객 초청 행위와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訃告 行爲는 제한되어야 한다. 경조금 전달의 불편과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요구된다. 가정의례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예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체국의 慶弔事 카드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권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이외에는 경조금을 받지 않는 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식장에서 금전을 주고 받는 문화가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相互扶助의 의미가 왜곡되어 변질된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서민의 경우 아는 사람들 간에 집안의 大事에서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볼 때 扶助金 授受慣行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일부 상류층 및 힘을 갖고 있는 계층의 경우 이러한 집안의 대사를 이용해서 한밑천 잡는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의 왜곡된 金錢授受 慣行이 서민들의 相互扶助 慣行까지도 汚染시킨다는 데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제도적인 제재로서 접근할 수 없으며,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인데, 이는 현재 시도되고 있듯이 市民團體의 적극적인 啓蒙運動이나 監視活動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경조금 문화의 폐해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공무원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에서 公共部門의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公務員을 포함한 公共機關 종사자에서 부터 경조비 과다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전 總務處에서 제시하였으나 이후 유야무야되어 버린 慶弔金の 負擔 範圍와 規模를 制限하는 조치 등의 부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의 솔선수범이 개선의 필수 요건이며, 이러한 역할로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

력이 가장 효과가 큰 방안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조금 관계만 아니라 가정의례관련 다른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라. 家庭儀禮關聯 서비스의 營業制度 改善

혼례관련 서비스의 營業慣行은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혼례식장과 더불어 부속물품 및 서비스의 끼워팔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혼잡한 식장에서 主賓 및 賀客 모두 혼례식이고, 폐백이고 피로연이고 빨리 해치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이렇게 질낮은 영업을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는 고객들 및 업주들 모두에게 책임의 일부가 있다. 顧客들의 경우 결혼식의 신성·엄숙함을 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의미는 퇴색한 채 단순히 해치워 버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러한 저질 서비스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식에 대한 의미를 되찾으려하는 진지함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떠한 개선안도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業主의 경우 지금과 같이 政府의 價格 統制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한 苦肉之策으로 끼워팔기 및 무리한 시간배치 및 피로연 장소 등의 바가지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告發 및 斷續을 통해 이러한 전근대적인 영업관행에 대한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혼례서비스 시설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즉 이렇게 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고 전근대적 경영을 하고 있는 현재의 혼례업소들이 도태되거나 혹은 개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公共場所가 매력적인 혼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관리운영을 開放하고 合理化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서비스가 불충분하므로 PC통신 등에 저렴한 公益施設의 혼례식 利用 情報를 체계적

으로 提供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익시설에서 혼례식을 기피하는 이유로서 관련 부대서비스가 불비하다는 지적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익시설 이용의 경우에도 질 좋은 서비스가 적정가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시설 종사자 혹은 관련 단체에게 어떠한 형태로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經營을 合理化할 필요가 있다.

장묘 서비스업의 전근대적 영업관행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장묘 서비스업의 閉鎖性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례를 치루는 喪主側 입장에서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業者의 입장에서조차 불만이 크게 쌓여 장묘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營業制度 導入과 관련된 規制를 緩和해야 한다. 따라서 상장례 관련 서비스 영업제도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장묘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行政的 節次를 簡素化하는 등 제도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장례장소는 병원영안실 이외의 전문장례식장의 공급을 지원하고, 종교기관의 장례식장 및 장의서비스 사업을 유도한다. 농협의 장제사업, 종교기관 등 장묘관련 서비스 施設과 業體를 多樣化하여 供給擴大를 유도한다.

둘째, 장묘 서비스업의 시장제한적 요소의 철폐가 필요하며, 公正한 去來制度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은 장묘 서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공식가격 이외의 追加費用 強要에 기인한다. 따라서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묘관련 서비스업 설치의 제약이 되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장묘관련 전문서비스업의 團地化와 종합서비스에 대한 情報體系 構築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도덕한 장묘 서비스업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효율적인 장묘관련 업무담당을 위한 專門部署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및 인력을 지원하며, 지역 및 개인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을 조정하고 장묘관련 行政機能에 대한 監督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葬墓文化의 先進化를 위하여는 장묘관련 시설의 개선 및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의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화장 및 관련 부대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며, 家族納骨墓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하는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의 보급에 과감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가정의례관련 제도는 관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실행이 전제되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制度的改善과 行政的支援, 그리고 지속적인 弘報活動 및 市民運動을 통해 意識改革이 병행되어 추진될 때 건전한 장묘문화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健全한 家庭儀禮文化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특히 가정의례 비용문제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도 있지만 계속 존속하기를 바라는 집단도 있으며, 또 실제로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도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상호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制度改善의 내용은 일반 국민들

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가정의례의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의례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성원의 결속강화를 공식적으로 象徵化하고 있는 가정의례의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가정의례, 특히 의례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의 生活樣式과 가족구성원의 價値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의례와 관련된 사회 병리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선진화 전략을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젖어 지나치게 物質主義를 강조하는 가정의례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 전통적 미풍양식을 간직한다고 하여 과거 형식적인 가정의례의 모습을 고집하는 사고방식보다는 가정의례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지켜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전한 固有微風良俗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가정의례 관행의 변화를 사회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으로 받아들이되, 健全한 家庭儀禮 文化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건전한 가정의례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사회 지도층 및 부유층의 솔선수범이 필수조건임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지 않다.

參 考 文 獻

- 강승필, 「교통혼잡비용」, 『무질서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주학
중·박명호 편저, 한국개발원 국민경제연구소, 1995.
-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 김분옥, 「너무 벅찬 결혼비용」, 『여성동아』 36호, 1970.
- 박숙자,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이효재 외, 또하나의 문화, 1991, pp.75~116.
- 박순일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반 개념(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2.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5.
- 이현송·이필도, 『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이현송·배화옥,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1996.
- 장의자동차협회, 내부자료, 1995.
-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혼인비용 실태조사 보고서』, 1978, 1987.
- _____,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1993,
1996.

- _____, 『경조비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4, 1997.
- 조남훈 외,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최현숙,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_____, 『한국주요경제지표』, 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96-09, 1996.
- _____, 『건전가정의례 정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 96-11, 1996.
- 한국소비자보호원, 『장의서비스 및 사설공원묘지 실태조사 결과』, 1990.
- _____, 『혼수실태 조사결과』, 1990.
- _____,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10.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996.